#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기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56 발의연월일: 2024. 6. 5.

발 의 자:김기현·김승수·서범수

박성민 · 윤한홍 · 곽규택

인요한 • 우재준 • 김대식

박수영 · 김태선 · 구자근
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수도권으로 의료 인력이 집중됨에 따라 지역 간 의료 격차가심각해지고 있으며,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응급·외상·감염 및 분만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공공의료 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공공의료의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제공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의 분원을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둘 수 있도록 하고, 국가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분 원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(안 제3조의2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조의2(분원의 설치 등) ①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(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) 이외의 지역에 분원(分院)을 둘 수 있다.
  - ② 국가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분원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  -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분원 설치가 신속히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「국가재정법」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3조의2(분원의 설치 등) ① 국
	립중앙의료원은 필요한 경우
	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
	도권(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
	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
	한다) 이외의 지역에 분원(分
	院)을 둘 수 있다.
	② 국가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
	해소하고 공공보건의료를 강화
	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분
	원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
	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	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분원 설
	치가 신속히 추진될 필요성이
	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
	「국가재정법」 제38조제1항에
	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
	면제할 수 있다.